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24
----------	------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의자 : 염동열 · 함진규 · 권석창
조훈현 · 이종배 · 이양수
문진국 · 김진태 · 김명연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과内外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품질 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본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시범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서비

스 품질 향상의 우선적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광 부문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서비스 품질 통합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10 신설).
-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 11 신설).
-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안 제48조의12 신설).
- 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수수료 부과, 권한의 위임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16호 신설, 안 제80조제3항제2호의2 삭제 및 제8호 신설, 안 제86조제2항제6호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의10부터 제48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돋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3. 그 밖에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이 아닌 인증제도 중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이하 “동등성 인정 인증”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등성 인정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12(시범사업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

인증제의 효율적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

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제3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86조제2항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종전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객의 편의를 돋고 관광서비스
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
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
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
광사업(호텔업, 약영장업, 국
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한
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3. 그 밖에 관광사업과 밀접하
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
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
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관광 품질인증이 아닌 인증제
도 중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동
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
(이하 “동등성 인정 인증”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등성 인정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p><u>2. 제48조의10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p> <p>제48조의12(시범사업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효율적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1. ~ 15. (생략)</p> <p><u><신설></u></p> <p>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p> <p>제79조(수수료) ----- -----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u>16.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u></p> <p>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p>
--	---

<p>• ② (생 략)</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u>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u></p> <p>3. ~ 7. (생 략)</p> <p><u><신 설></u></p> <p>④ (생 략)</p> <p>제86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 7. (현행과 같음)</p> <p><u>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u></p>
---	--

③ (생략)

한자

③ (현행과 같음)